2019년도 제2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10. 15.(화요일), 11:00

o 장　　소 : 보호원 9층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박성호, 임진모, 전응준(분과위원장)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1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정현순 전문위원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700건(안건번호 제2019-130182호~13303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중단된 게시물에 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만 권고하기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전응준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1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정현순 전문위원 : 회의록 8페이지의 민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A 위원 : 전문위원 의견에 따라 민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해당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전응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은 민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정현순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30182호~13303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5,700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30182호는 보호원이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2019. 4. 9. '비올레타(가수: IZ*ONE(아이즈원))'의 음원 파일의 피치(pitch)를 변경한 후 개인 블로그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30182호 변형된 음원을 제공하는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비올레타(가수: IZ*ONE(아이즈원))’ 원곡에 대하여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원곡을 재생하면서) 가수 ‘IZ*ONE(아이즈원)‘이 실연한 ’비올레타‘는 여자 목소리인데, 음원의 피치(pitch)를 변경한 심의대상 게시물은 남자 목소리임을 확인할 수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의 진동수를 낮은 피치의 음으로 변경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임

- A 위원 : 판례는 음악의 3요소로 멜로디(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 멜로디 즉 가락(melody)과 관련해서는 개별음의 고저(pitch), 음의 장단(duration)으로 이루어진다고 함
  심의대상물의 피치(pitch)와 음의 고저(pitch)가 같은 것인지 질의함

- B 위원 : 음의 고저는 음 하나의 높낮이를 하는 것이고, 피치는 마디나 전체의 높낮이를 하는 것임
  또한 가락은 음의 진행으로, 멜로디의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자(작곡가) 및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B 위원 : 게시자가 피치(pitch)를 변경하여 게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게시자는 피치(pitch)를 변경하면 복제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C 위원 : 게시자는 저작권보호 필터링 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치(pitch)를 변경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판을 제시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 게시판에는 본 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영상물을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의 게시판의 다른 게시물의 스트리밍 재생을 요청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판 중 '[■■■■ 피치변경]트와이스-Feel Special'를 제시하면서) 가수 'TWICE (트와이스)' 가 실연한 'Feel Special' 에 대하여 음원의 피치(pitch)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음
(원곡을 재생하면서) 원곡은 여자 목소리임

- B 위원 : 해당 게시물도 심의대상게시물과 같이 낮은 피치(pitch)의 음으로 변경하여 원곡과 달리 남자목소리로 들림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안건번호 제2019-130182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전송권뿐만 아니라 저작자(작곡가) 및 실연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임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30182호는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30183호~13022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다수의 만화복제물(만화를 캡처한 jpg.파일)을 판매한 사안임(총 54개 게시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한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실행화면을 제시하면서)민원인은 보호원의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였고,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모두 민원인이 수집한 것임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19-130183호~130229호 웹하드 사이트의 만화 불법복제물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과 같이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함

- B 위원 : 합법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견 없이 가결 의견임

- 전응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2019-130183호~130229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130230호, 13023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네이버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애니메이션 한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30230호 게시물은 '(방송)명탐정 코난(1996)' 945화 전체분량(24분 40초, 우리말 자막포함)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물의 재생 횟수는 2019. 10. 8. 현재 89회임 우리말 번역 및 자막 제작자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아니함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30231호 게시물은 '(방송)명탐정 코난(1996)' 952화 전체분량(24분 40초, 우리말 자막포함)을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물의 재생 횟수는 2019. 10. 8. 현재 10,716회임

우리말 번역 및 자막 제작자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아니함

해당 블로그는 다수의 해외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전응준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제2019-130230호, 130231호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30230호, 130231호의 안건표를 보면 '명탐정 코난(1996)'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본 건 저작물이 1996년도에 방송된 것인지 질의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보호원의 담당자가 저작물 등록을 할 때 '명탐정 코난'과 같은 시리즈물에 대해서는 처음 방영된 날짜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은 일본 ‘요미우리TV’에서 1996년 방영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까지 방영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제2019-130230호는 명탐정 코난 945화로 일본에서 2019. 6. 29. 방영하였으며 국내 공식 방영 전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제2019-130231호는 명탐정 코난 952화로 일본에서 2019. 9. 2. 방영하였으며 국내 공식 방영 전임

- A 위원 : 충분한 답이 되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에 방영되지 않은 애니메이션에 대하여 우리말 번역 자막이 함께 제공되고 있는데, 자막의 출처가 의문임

- 정현순 전문위원 : 자막 제작자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게시자가 직접 번역의 보장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곳에서 퍼왔을 가능성도 있음

- B 위원 : 만약 다른 곳에서 퍼온 것이라면 원천에 대하여도 함께 시정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임

- 정현순 전문위원 :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원천에 대하여 알기는 어려워 보임

- A 위원 :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동의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국내 미방영된 애니메이션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 B 위원 : 동의함

- 전응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30230호, 130231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는 블로그 게시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만장일치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 정현순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30232호~133038호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프로그램, 게임, 만화, 어문, 영상물 등을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 명백하게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이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일반적인 데드카피이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전응준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30232호~13303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를,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30182호~133038호의 게시물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전응준 분과위원장이 제2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1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0. 22.

분과위원장 전응준

위원 임진모

위원 박성호